

인천광역시고시 제2012-295호

도시관리계획(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(전화 440-4625), 중구청 도시개발과(전화 760-7517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2. 12. 3.

인천광역시장

1. 결정취지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임
2. 위 치 : 중구 북성동1가 98-53번지 일원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월미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	북성동1가 98-53번지 일원	262,323.4	증)486	262,809.4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위치	면적 (m ²)	결정사유
변경	-	북성동1가 98-53번지일원	262,809.4	•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하여 북성동1가 98-441번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

나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

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	면적(m ²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262,323.4	증)486	262,809.4	100.0	
상업지역	소계	203,809.4	-	203,809.4	77.5	
	일반상업지역	203,809.4	-	203,809.4	77.5	
주거지역	소계	-	증)486	486	0.2	
	준주거지역	-	증)486	486	0.2	
공업지역	소계	44,687	-	44,687	17.0	
	준공업지역	44,687	-	44,687	17.0	
녹지지역	소계	13,827	-	13,827	5.3	
	보전녹지지역	13,827	-	13,827	5.3	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 (%)	변경사유
		기정	변경			
-	북성동1가 98-441번지	준주거 지역	준주거 지역	증)486.0	300%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 기 결정된 용도지역의 변경없이 구역내 편입

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□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: 신설

도면번호	가구번호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4-1-1	4-1-1	486	북성동1가98-441	486	신설

■ 가구 및 획지 결정 사유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위 치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4-1-1	4-1-1	98-44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구(신설) : 486㎡ 획지(신설) : 98-441(486㎡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북성동1가 98-441번지를 지구 단위계획구역내 편입에 따른 가구 및 획지 신설

라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
(변경)조서

□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: 신설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D	북성동1가 98-441번지	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종근린생활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 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, 제조업소, 수리점 제외) ○ 문화 및 집회시설(예식장 제외) ○ 판매시설 중 '나'목 및 '다'목 ○ 의료시설(격리병원 제외) ○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○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, 야외극장, 어린이회관 ○ 운동시설(옥외골프장 제외) 	
			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, 휴게음식점 ○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 ○ 판매시설 중 상점
			불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○ 지하층 : 모든 건축물(주차장제외)
		건폐율	60% 이하	
		용적률	300% 이하	
		높이	3층 이하	
		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축한계선 	
			- 율미 문화의 거리변 : 3m	

□ 건축물에 대한 용도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기 정			변 경		
도면 표시	용도 구분	계 획 내 용	도면 표시	용도 구분	계 획 내 용
S	허용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종근린생활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 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, 옥외골프연습장, 제조업소, 수리점 제외) ○ 문화 및 집회시설 ○ 판매시설 중 '나'목 및 '다'목 ○ 의료시설 (격리병원, 장례식장 제외) ○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○ 운동시설 (옥외 골프연습장 제외) ○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	S	허용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종근린생활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 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, 옥외골프연습장, 제조업소, 수리점 제외) ○ 문화 및 집회시설 ○ 판매시설 중 '나'목 및 '다'목 ○ 의료시설 (격리병원, 장례식장 제외) ○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○ 운동시설 (옥외 골프연습장 제외) ○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○ 공장 (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) - 단, 인천광역시 조례 제38조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함
	불허 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	불허 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4. 지형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: 시보게재 생략).